

美國에 있어서 兒童 및 青少年 圖書檢閱에 관한 考察 (上)

金 香 辛

全南大圖書館學科

I. 序 論

1980년 11월 美國 大統領 選舉以後, 保守主義의 旋風이 불면서 兒童 및 青少年 圖書의 檢閱, 公立學校의 教材選擇을 둘러싼 學校理事會와 教師와의 爹烈한 論爭은 平等과 自由를 保障하는 美國修正憲法와 Library Bill of Rights(도서관 권리장전)의 男女老少, 人種, 宗教, 背景을 막론하고 도서관에의 自由 接近(Free Access to Libraries for Minors)에 대한 有權解釋을 爭點으로 그 攻防戰은 끊임이 없다. 여기에 Minor란 女性, 兒童, 小數人種集團을 일컬으며 兒童 및 青少年이라 함은 18才 未滿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檢열운동은 公立學校 교과과정과 教材를 일일이 干涉하는 The John Birch Society와 같은 團體의 再登場과 宗教團體이면서 강력한 政治團體로 Reagan씨를 美國 大統領에 당선시켰고 國會의 聚論을 모아 “Moral America”라는 旗幟 아래 果敢히 檢열을 단행하고 있는 The Moral Majority의 出現으로 더욱 過熱狀態에 놓이게 되었다.¹⁾

ALA의 Intellectual Freedom Office의 所長인 Ms. Judith Krug에 따르면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以後 도서검열 件數는 그 以前에 比하여 3倍 以上으로 증가 했다고 한다.²⁾

Ms. Krug는 정치적인 動機로 일어난 檢열의 實例를 다음과 같이 제시, 그 當時의 雾靄氣를 說明하고 있다. 大統領 選舉日인 1980년 11월 4일에 Virginia주 Abingdon의 한 地域代表는 Mr. Reagan과 그의 保守派追從者들의 선거標語를 引用하면서 Virginia州 Abingdon Public Library에서 대출된 書籍名單을 뽑아서 그의

1) Shuma, Bruce A. “The Moral Majority and Popular Political Issues.” *Drexel Library Quarterly*, Winter 1982, p.26.

2) “OIF’s Krug Claims Censorship Issues Have Increased Since Nov Election.” *School Library Journal*, January 1981, p.11.

檢閱 챔페인의 資料로 사용하였다.³⁾

Virginia 주에서는 이러한 記錄은 “機密서류”⁴⁾에 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機密書類의 惡用으로 The Right of Privacy에 저촉이 되며 이러한 개인의 신상에 關한 情報는 1974년에 承認된 Privacy Act와 1966년에 承認되어 1974년에 修正된 Information Act에 저촉이 되는 것이였다.

이와 같은 權利侵害 뿐만 아니라 도서 檢閱의 문제 또한 社會的인 物議를 일으켜 왔고 마침내는 Island Trees 訴訟事件을 美國 大法院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

Island Trees Case는 Library Bill of Rights (圖書館 權利章典)의 解說 및 적용문제, Intellectual Freedom, 나아가서는 美國의 修正憲法(First Amendment of Constitution)등의 有權解擇의 觀點에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인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도서관의 對應策에 中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檢閱은 歷史的으로 그 時代의 社會的, 政治的 與件에 따라 여러 形態로 行하여져 있고 檢閱의 對象 및 主題도 多樣하지만 筆者는 여기에서 兒童 및 青少年圖書에서 性的描寫나 內容問題로 因하여 提起되는 檢閱을 考察하고 ALA의 Library Bill of Rights의 7個條項의 解說과 兒童 및 青少年圖書檢閱의 代表的인 例로서 7년에 결친 Island Trees 訴訟과 최근 美大法院의 이에 對한 慮度등을 考察함으로써 도서관인의 아동 및 청소년에 對한 社會的責任과 姿勢를 論함으로써 도서관인의 立場을 응호하고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發生할 가능성이 있는 이 檢閱의 문제를 未然에 防止하고자 한다.

II. 圖書檢閱의 歷史的 考察

美國에서 最初의 檢閱對象은 神性冒瀆이라는 觀點에서 淫亂하게 表現된 藝術品들이었다. 1664년 Massachusetts의 Thomas à Kempis의 “Imitation of Christ”가 이 神性冒瀆罪로 檢閱에 걸린 最初의 境遇이며 1842년 美聯邦法인 “The Customs Law of 1842”란 關稅法을 制定하여 淫亂한 그림, 雕刻, 版畫等의 輸入을 規制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印刷物에 對한 檢閱은 없었다.

19世紀에 이르러서는 文學作品의 活動이 活發하여집과 同時に 이에 따라 檢閱도 嚴格하여 졌으며, 또한 이에 맞서 文學作品의 檢閱에 反旗를 들어 斗爭에 나선 最初의 人物인 Anthony Comstock도 이때의 사람이다.

20世紀 後半 1970年代에는 檢閱의 樣相이 바뀌어 “敎育의 質的向上”이라는 旗幟

3) Shuma, *op. cit.*, p.32.

4) *Ibid.*, p.32.

아래 주로 公立學校의 教科書를 對象으로 높은 檢閱이 行하여 지기 始作하였고 이에 對應하는 檢閱反對運動도 따라서 劇烈하여지고 集團化되기 始作하였다. 이렇게 過熱된 檢閱運動은 이제 그 對象을 教科書뿐만 아니라 文學作品의 모든 範疇에 適用시켜 司書의 立場에서도 兒童 및 青少年圖書를 選擇하는데 보다 더 많은 碍路點을 가져다 주고 있다.

檢閱對象의 範圍는 아래와 같다.⁵⁾

- 1) 宗教的인 神性冒瀆의 言句 及 內容.
- 2) 聖經의 偶話化 또는 神話化.
- 3) 個人의 私生活을 侵害하는 教授法.
- 4) 神의 人性化 즉 하느님을 人間取扱하는 內容 및 語句.
- 5) 家族關係를 害하는 內容.
- 6) 性的 描寫의 語句 및 內容(淫亂한 用語 및 內容)
- 7) 反 美國體制를 나타내는 立場.
- 8) 標準 英語가 아닌 隱語 및 사투리.
- 9) 政府當局에 對한 不敬語 및 그 內容 그리고 政府當局에 對한 不敬스러운 質疑
- 10) 殘惡하고 劇烈한 作品內容.
- 11) 極度의 悲劇作品.
- 12) 小數人種과 小數子群에 對한 輕蔑.

以上의 범주중 가장 많이 檢閱의 對象에 오르는 것은 文學·藝術作品의 性的 表現이다.

III. Library Bill of Rights의 改正暨 解說

圖書 檢閱의 焦點은 그 時代의 思潮에 따라 종교적 檢閱, 政治的 檢閱, 社會團體의 壓力에 依한 檢閱 등 多樣한 形態로 加하여져 왔다. Virginia M. Leight Glover는 그녀의 博士學位 論文에서 檢閱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서검열이란 일반적으로 도서관 장서에서 圖書를 廢棄處分하는 試圖 혹은 그 도서에 接近을 제한하는 행위라”고⁶⁾ 했으며 Claire St. Cleve England는 그녀의 博士學位 論文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5) Jenkinson, Edward B. "Dirty Dictionaries, Obscene Nursery Rhymes, and Burned Books." In *Dealing with Censorship*, ed. by James E. Davis (Urbana, IL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79) p.5-6.
6) Serebnich, Judith. "Self-Censorship by Librarians." *Drexel Library Quarterly*, Winter 1982, p.41.

“도서검열이란 도서대출의 제한 혹은 도서관 사서가 도서내용에 대해 심사하지 않은채 미리 결정하여 성인용 또는 接近禁止등의 표지를 붙여 특정한 독자들의 接近을 제한시키는 행위”⁷⁾라고 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도서관 司書가 곧 檢閱官임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司書의 任務로 受書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나 貸出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結局 圖書를 選擇하게 되고, 選擇이라 함은 다른 그外의 圖書의 利用権을 制限한다는 뜻이며 또한 限定된 圖書에 優先權을 주어 選擇되게 함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司書의 檢閱行爲는 圖書館 專門職으로서 回避할 수 없는 任務遂行 過程에서 發生되는 行爲이기 때문에 이러한 “Self-Censorship”⁸⁾은 圖書評價(Book Evaluation)와 거의 같은 의미로써 Intellectual Freedom의 問題나 兒童 및 青少年들의 圖書館 資料의 自由 接近이라는 本質的인 問題에는 結付시키고자 하지는 않는다. ALA協議會는 1981년 100주년 年次大會에서 ALA의 Intellectual Freedom에 關한 基本政策 및 原則인 Library Bill of Rights의 7개項目의 改正된 解說을 승인통과 시켰다.

o) Library Bill of Rights(LBR)은 Des Moines 공공도서관의 사서였던 Forrest Spaulding⁹⁾이 기초한 문서에서 초안되어 1938년 11월 21일 그 Des Moines 공공도서관의 Bill of Rights으로 채택되었으며 1961년 2월 2일의 수정안과 함께 1948년도의 전개정본에 의거 ALA 협의회는 1967년 6월 28일 그해당 부서의 분과위원회의 全建議 사항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의 결실이 즉 Library Bill of Rights으로 성문화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LBR은 모체인 1939년판의 LBR과는 상당히 다른 문서이기도 하다. 모체인 구 LBR은 側見없는 도서선택, 均衡있는 장서구입, 평등한 회의실 이용 및 자유로운 회의실개방등에 대한 원칙을 우선적으로 규정하였지만 그후 지금의 LBR은 많은 내용의 변천을 거듭해서 훨씬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비한 문서이다. 현재의 LBR는 특히 도서관자료의 검열과 이 검열이 도서관 기능에 미치는 影響力を 勘察하여 圖書檢閱에 抗議, 對應하기 為한 原則과 廣範圍한 觀點에서의 Intellectual Freedom을 보호하기 為한 具體的인 原則을 마련하였다. ALA에 依한 Library Bill of Right(LBR)의 7개의 改正된 解說은 다음과 같다.⁹⁾

7) Ibid.

8) McKee, Richard E. “Censorship Research.” *An Intellectual Freedom Primer*, ed. by Charles H. Busha,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Inc., 1977), p.210.

9) “The Library Bill of Rights: Revised Interpretations.” *American Libraries*, September 1981, pp 492-496.

1) Challenged Materials ; 1972年 6月 25日 採擇되어 1981年 7月 1日에 修正되었다 ALA는 모든 도서관으로 하여금 具體的이고 明確하게 規定된 圖書館 諸般 資料에 對해 成文化된 資料選擇 基準과 原則(Selection Policy)을 마련하여 둘 責任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 資料選擇基準에 저촉되지 않는 도서관 資料는 Library Bill of Rights의 第 1條와 第 2條에 依據하여 非合法的인 境遇는勿論이고 合法的인 壓力에 依하여서도 強制로 廢棄處分할 수 없음을 闡明하고 있다.

2) Evaluating Library Collection :

1973년 2월 2일에 採擇되어 1981년 7月 1日 修正되었다. 圖書館資料의 活性化를 為하고 利用者들의 最近의 關心과 要求에 應하기 為하여 繼續的인 圖書館 資料의 檢討가 必要하다.

그러나 以上의 目的을 達成하기 為한 이 資料의 檢討가 論爭의 憂慮가 있다거나 또는 그 地域社會의 一部層의 反對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推測되는 圖書를 廢棄處分하기 為한 手段으로 惡用되어서는 않된다. 이러한 자료평가 機能의 惡用은 Intellectual Freedom의 規定을 違反하는 行爲이며 또한 LBR의 序文 및 第 1條와 第 2條에 違背되는 行爲임을 眇하고 있다.

3) Expurgation of Library Materials :

1973년 2월 2일에 採擇되어 1981년 7월 1일에 修正되었다. 새로 改正된 解說에 依하면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Expurgation”의 定義는 圖書館 스스로 그들의 圖書 및 資料를 削除, 除外, 變更 或은 圖書 및 資料의 湮滅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行爲는 도서관이 完全한 情報에의 接近을 妨害하는 作爲로서 LBR의 第 1條, 第 2條, 第 3條에 抵觸된 事實이다.

4) Statement on Labeling :

1951년 1월 13일 字로 採擇되어 1971년 6월 25일과 1981년 7월 1일에 修正되었다. “Labeling”이라 함은 偏見으로 該當 資料를 指定하고 標識를 붙여 利用者들로부터 隔離시켜 限定된 利用者에게만 利用시키는 行爲를 말한다.

ALA가 이러한 행위를 LBR에 抵觸되는 事項으로 看做하는 根據는 다음과 같다.¹⁰⁾ ① Labeling은 편견적인 자세이며 이것은 곧 檢閱 道具가 되기 때문이다. ② 어느 경우에는 司書의 倫理觀에 依하여 任意로 도서資料의 選擇의 基準을 세우기 쉬우며 다시 말하여 客觀性이 缺如되기 쉽다는 이유이며 ③ 도서관 司書는 所藏하고 있는 圖書나 資料等의 內容 및 思想을 主觀的으로 대변하여서는 않된다는 理由등이

10) *Ibid.*, p.495.

다.

5) Policy on Governmental Intimidation : 1973년 2월 2일에 採擇되어 1981년 7월 1일에 修正되었다. ALA는 個個人 혹은 市民들을 政府의 特權을 使用하여 表現의 自由를 彈壓하여서는 않되며 그러한 경우 LBR에 抵觸되는 行爲라고 못박고 있다.

6) Restricted Access to Library Materials : 1973년 2월 2일 採擇되어 1981년 7월 1일에 修正되었다. 도서관의 特定한 主題나 特定한 도서에 接近을 制限하는 事例는 非一非再한 일로 “出入禁止” “成人用” 혹은 “制限區域” 等의 多樣한 標識로 特定한 利用者 즉 兒童이나 青少年 利用者들의 利用을 制限하고 있다. 이터한 制約은 Intellectual Freedom 뿐만 아니라 LBR의 제 2조와 제 5조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7) Free Access to Libraries for Minors ; 1977년 6월 30일자로 採擇되어 1981년 7월 1일에 修正되었으며 이 解說은 아동 및 青少年 圖書의 檢閱問題에 中요한 内容 이므로 다음 章에서 重點的으로 다루고자 한다.

N. Free Access to Libraries for Minors

過去 10餘年동안의 美國의 社會의 與件은 兒童의 地位 向上에 對하여 再考하여 불必要性을 느끼게 하여 왔다. 社會에 있어서의 兒童의 地位問題는 女權運動이나 市民權行使의 問題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의 社會的인 運動으로 再考되고 再評價되어 所謂 말하는 兒童權利運動(Children's Rights Movement)이라고 불리워 지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兒童”이라는 用語는 18才未滿의 兒童 및 青少年을 일컫는 法律의 概念으로 使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法律用語로서의 “Children”은 法律이 定하는 權利와 責任을 지는 特別한 地位의 兒童으로 小數集團의 사람(minority)을 말한다.¹¹⁾ 그러므로 “兒童이란 Library Bill of Rights의 7個의 改正된 解說中 “小數集團의 圖書館 自由接近”에서 말하는 小數集團 即 女性, 小數人種集團과 함께 小數集團에 屬함을 말해 두고자 한다.

1974년에 闡明된 Parson's Bill of Rights for Children에서 “兒童은 成人이 利用할 수 있는 모든 情報 특히 成人の 立場에서 兒童이 利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情報를 얻을 權利가 있다”¹²⁾고 記述되어 있는데 이 句節에 含蓄된 意味는 “性에 대한 情報”임이 分明하다. 오늘날 미국사회는 어느 時代보다도 높은 性의 開放으로

11) Kimmel, M.M. "Children's Rights, Parents Rights — A Librarian's Dilemma," *School Library Journal*, October 1980, p.112.

12) Boulding, Elise. *Children's Rights and Wheel of Life*. (New Jersey: Transaction Books, 1979), p.145.

性에 대한 出版物等' 많은 情報가 露出되어 있는 社會이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初, 中高等公立學校나 公共圖書館의 兒童圖書館만을 對象으로 하여 教育上 利롭지 않다는 理由로 이런 資料를 淫談悖說을 뜻하는 用語로 뜻박아 接近을 制限하고 檢閱에 努力を 傾注하는 것은 “人生에 있어서 중요한一面”¹³⁾을 度外視하는 行爲로서 決코 옳은 일이 아니다.

어느 한 公立學校의 英語教師는 이토록 地域社會의 市民들이 校園나 公共圖書館을 對象으로 檢閱소동을 벌리는 것은 1960년대의 美國 學生權利運動 以後 青少年 學生들의 社會問題는 잘못된 校園教育 및 公共圖書館等의 社會教育機關의 잘못된 善導教育에서 부터 비롯된 것이란 先入見과 租稅負擔者로서의 小市民들은 經濟的 Inflation과 聯邦政府나 州政府에 對한 不滿等을 直接 行政府에 傳達할 수 없는 경우에 도서관의 是非로 그들의 不滿을 解消하는 武器로 使用하여 뉴스의 焦點으로 삼는 傾向이 있다.¹⁴⁾라고 허심탄회하게 主場하여 兒童圖書檢閱의 實態와 貞意를 暴露하기도 했다. 한편 保守的 地域社會의 市民들, 特히 學父母들은 어찌한 理由에서든지 그들 兒童들의 圖書館利用을 制限함으로써 그들 自身의 價值判斷에 맞는 讀書活動을 勵獎하고자 하나 이는 時代에 副應하는 姿勢가 아님은勿論이고 LBR의 第五條에 抵觸되는 事例가 되는 것이다.

LBR 第五條는 “個人이 圖書館을 利用할 수 있는 權利는 性別, 年齡, 背景 또는 見解의 差異로 因하여 拒絕당하거나 剝奪당할 수 없다”라고 闡明하고 青少年, 兒童 및 小數集團에 對한 圖書館 資料利用을 制限하는 어찌한 事例도 第五條를 違反하는 事例이기 때문에 圖書館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은 學父母들과 社會團體들을 說得하여야 함을 示唆하여 주고 있다. 上記 叙述中 “制限”이라 함은 直接的인 圖書館 資料의 廢棄處分, 圖書館資料 購入의 拒絕等과 같은 積極的인 檢閱과 다르진 하지만 이것 또한 檢閱의 범주에 속하며 빈번히 Intellectual Freedom의 原則에 違背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青少年 兒童들의 圖書館資料 利用에 對한 規制의 問題는 社會의 物議를 일으키며 繼續的으로 도서관關係人們의 難題가 되고 있지만 學父母나 社會의 物議를 念慮하여 青少年 兒童들의 圖書館 資料 利用을 規制하는 圖書館이나 校園理事會는 그들의 社會的 責任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중히 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次號 繼續>

13) “The Library Bill of Rights: Revised Interpretations.” *op. cit.*, p.493.

14) Jenkinson, *op. cit.*, p.5.